<기고문> 식품 소비기한 표시제의 안정적 도입 위한 계도기간 부여

- 기고자: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안전관리과장 황선순

우리 식생활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가공식품에는 소비자에게 다양한 정보제공을 위해 표시해야 하는 사항이 여러 가지가 있고 그중 소비자가 주의 깊게 확인해야 하는 것이 유통기한이다.

‘유통기한’ 이란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으로 영업자는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진열・보관・사용할 수 없어 폐기해야 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왔다. 이러한 인식으로 인해 유통기한이 지나도 일정기간 안전하게 섭취가 가능하나 많은 소비자・영업자가 유통기한을 기점으로 식품의 폐기여부를 고민하며 혼란스러워 한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혼란을 방지하면서 소비자에게 명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식품 폐기물 감소를 위해 **‘23년 1월 1일부터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 표시제(냉장보관 우유, 환원유 제외)가 시행**된다.

식약처는 대부분의 가공식품이 해당되는 제도 변경 규모에 비해 유예기간이 짧게 부여되어 많은 품목의 포장재를 동시에 변경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포장지 교체・스티커 처리 등에 따른 비용부담을 줄이고 잔여 포장지를 폐기하는 자원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계도기간을 ‘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까지 부여**하게 되었다. 아울러, **시행일 이전에 소비기한 표시를 허용**하면서 제품생산, 포장재 소진시기 등 업체별 상황에 맞추어 안정적으로 도입 준비가 가능하게 되었다.

‘소비기한’ 이란 제시된 보관조건을 준수할 때 안전하게 식품 섭취가 가능한 기한으로 현행 유통기한 표시대상 제품이 소비기한 표시대상에 해당된다. 소비기한은 영업자 책임하에 기존의 유통기한을 그대로 소비기한으로 설정하여 표시하는 것은 가능하나 추후 식품별 원료, 제조방법, 포장방법, 보관조건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관능검사 및 미생물・이화학・물리적 지표측정실험 등 과학적 자료를 통해 설정하여야 한다. 아울러 소규모 영업자의 경제적인 지원을 위해 연구용역사업을 통해 매년 50개 유형씩 (‘22~’25) 총 200개 유형에 대해 설정할 예정이며, 영업자는 별도의 소비기한 설정 실험 없이 권장 소비기한 이내의 범위에서 기한을 자율적으로 설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소비기한 표시제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면 식품을 버리지 않고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는 것은 물론, 경제적 손실과 탄소배출까지 줄일수 있기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